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9차)]

2020. 12. 29.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참고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 9-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대응 지침 9-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 9-3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대응 지침 9-2판
내용 변경	코로나19 개요	
	(추가) 감염재생산지수	- 감염재생산지수 - 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추가) 전파경로	- 전파경로 -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신규) 무증상 감염	-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시 26.7%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개정) 진단 및 치료 - 세계 치명률 : 약 3.69%(WHO, 8.10기준) - 우리나라 치명률: 2.09%(8.10. 0시기준)	- 진단 및 치료 - 세계 치명률 : 2.33%(WHO, 12.4. 0시기준) - 우리나라 치명률: 1.48%(12.4. 0시기준)
	(개정)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개정)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④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④ 응급선별검사결과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개요	
	(추가) 상황1 - 의사환자 격리해제	- 상황2 - 의사환자 격리해제 ... 격리 해제 전 추가검사
	(개정) 상황2 - 대응개요 - 검역대응 흐름도 ... 검역대응 지침(제9판)	- 상황2 - 대응개요 - 검역대응 흐름도 ... 검역대응 지침(제9-2판)
	(추가) 상황4 - 확진환자 격리해제	- 상황4 - 확진환자 격리해제 ... 무증상, 유증상 격리해제 기준
	붙임	
	(개정) 1.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4. 격리통지서 12. 전국 보건소 현황(2019.6기준)	1.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4. 입원·격리통지서 12. 전국 보건소 현황(2019.12기준)

|| 목 차 ||

제1장. 수립배경

1. 목적	1
2. 기본방향	1
【참고1】 코로나19(COVID-19) 개요	2
【참고2】 코로나19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4

제2장.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상황 1.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5
상황 2. 해외귀국 유학생이 민원인으로 지사에 방문한 경우	13
상황 3. 직원이 의사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8
상황 4.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23

<붙임>	30
1.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31
2. 상황발생 보고 서식	36
3. 방역조치 명령서	37
4. 격리통지서	38
5.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39
6.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0
7. 지사 부분폐쇄 안내문	41
8. 지사 전체폐쇄 안내문	42
9. 지사사옥 부분폐쇄 보도자료	43
10. 지사사옥 전체폐쇄 보도자료	44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45
12. 전국 보건소 현황	46

제1장. 수립 배경

1 | 목적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비
- 공단 직원 또는 사무실 내 감염증 발생으로 사육을 일시폐쇄 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여 실제상황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 기본 방향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 * 마스크(N95, KF94, KF80 등),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
- 사무실 내 추정 및 확진환자(민원인 포함)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본부 상황보고 및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이동을 금지
- 부서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소속 직원가운데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할 경우, 첨부된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조치
- 본부, 지역본부,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직원의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함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 근무를 의무화하고 질병관리본부 1399, 지역번호+120, 보건소와 상담하도록 권고

참고 1 코로나19 (COVID-19) 개요

□ 임상적 특성

- (임상증상)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임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 (주요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 (감염재생산지수*)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 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 (전파경로)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 에어로졸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 (무증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시 26.7%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 (참고문헌)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 진단 및 치료

- (진단)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선별진료소에서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하기도(가래) 검체 채취하여 진행
- (치료)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
- ※ 세계 치명률은 약 2.33%(WHO, 12.4. 0시 기준), 우리나라 치명률은 1.48%(12.4. 0시 기준)

참고 2 코로나19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1 사례 정의

-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C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2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조사대상 유증상자①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결과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3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가능)
- ②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간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4 접촉자 범위 예시 ... WHO 5.10. 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이 접촉이 발생한 자

-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③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④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 결정

제2장.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상황 1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 대응 개요 》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감염병의심자 중 접촉자에 해당]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 능동감시 (진단검사 여부에 관계없음)	[의사환자] (보건소) 시설·입원 격리 → 진단검사 ① 양성이면, 확진자 사례 적용 ② 음성이면, 자가격리 ⊕ 능동감시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관할 보건소가 시·도 역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 실시함

[사례] 방문한 고객이 확진환자인 경우

- ▶ 접촉직원 : ○○지사 3급 김△△
- ▶ 접촉일시 : 2020. 11. 23일 12:40분, ○○지사 민원실
 ※ 민원인 ○○○은 발열로 8.4일 진단검사 → 8.5일 확진 판정(○○ 보건소)
- ▶ 노출기간 : 2020. 11. 23일 ~ 11. 25일 (3일간)
- ▶ 사육규모(자체 사육) … 지상 3층, 지하 1층
 - 1층(민원실, 자격부과부), 2층(징수부, 보험급여부), 3층(지사장실, 행정지원부)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지사장/센터장은 직원들에게 감염병의심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직원에게 '코로나19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 하고, 지시에 따른다.



- ◆ 지사장/센터장은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 (전체, 부분)한다.



※ 폐쇄 후 소독: ① (지자체장) 최초 방역조치 → ② (지사장, 센터장) 2~3회 자체소독 → ③ 8시간 이상(약제에 따라 다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의 업무를 **지역본부와 인근지사 등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지역본부 비상대책 별도 수립

2. 당사자 조치

○ 관할 보건소는 ○○지사에 확진환자가 다녀갔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최초 인지 보건소, 시·도 즉각대응팀)을 출동시킴

○ 지사장/센터장은 조사팀이 접촉자로 결정한 3급 김△△을 즉시 자가격리(공가, 복무기준에 따름) 하도록 조치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기준’ 참조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 **붙임4**

- 자가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지사장/센터장	▪ 김△△ 즉시 자가격리 조치	
---------	------------------	--

○ 3급 김△△은 자가격리(공가, 복무기준에 따름) 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김△△의 실거주지 보건소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으로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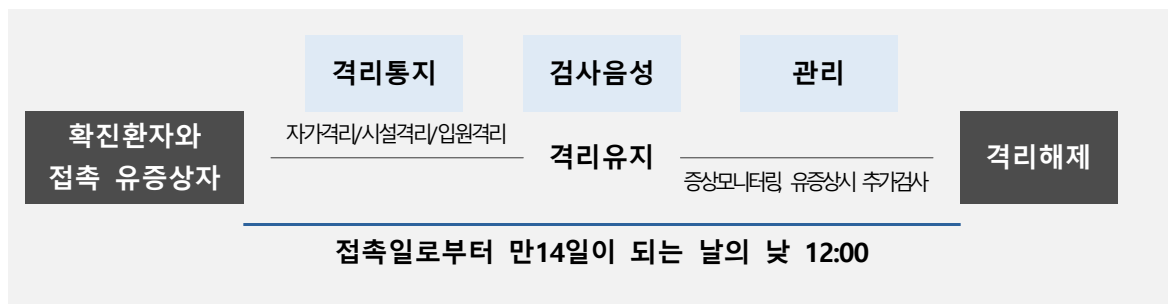
- 지사장/센터장은 김△△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사장/센터장	▪ 김△△ 보건소 지시 이행여부 확인	
---------	----------------------	--

○ 3급 김△△는 격리해제 여부를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 예시: 최종 접촉일(11.23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12.7일 낮 12:00에 격리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의사환자 격리해제 》



< 격리 해제 전 추가검사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낮 12:00에 격리 해제

-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 ⑤ 만 65세 이상
-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3. 소속직원 조치

① 확진환자와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확진환자가 방문해서 감염병의심자(확진환자 접촉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관할 보건소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지사 → 코로나19 비상대책단 ... 감염병의심자(확진환자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2'로 대체
 - ☞ 코로나19비상대책단: 정명훈 팀장(033-736-4822, 내선 0099-4822)

- 지사장/센터장은 확진환자 접촉 직원과 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다만, 필요시 지사장/센터장은 CCTV 등을 활용, 조사팀 출동 전에 의사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다중시설 이용현황 및 접촉한 사람 명단을 조사팀에 제출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 직원에게 '코로나19 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보고를 하도록 한다. **붙임2**

지사장/센터장	▪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사실 전 직원 알림 ▪ 코로나19 비상대책단 발생보고	
---------	---	---

② 보건소 조치 이행

직 원

- 전 직원은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사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3급 김△△은 별도공간에서 대기 ...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
- 전 직원은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 ※ 범위: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으로 설정
 - ※ 노출력 고려: 확진환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

전 직원	▪ 지사 내 대기(이동 금지) ▪ 개인 보호장구 착용(마스크 등)	
------	---	---

방역조치·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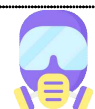
《 방역조치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방역조치: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등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코로나19비상대책단장)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지사장/센터장은** 관할 보건소장의 사무실 **방역명령에 따르며**, 실시방법·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소독이 끝난 3회로부터 8시간 이상 경과 후(사용 약제에 따라 다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방역팀)에서 실시**, 2·3회는 지사장/센터장이 외부업체 또는 자체소독 실시
- **지사장/센터장은**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사무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등 환경소독제
 - ※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에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 확인가능
 - (소독대상)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책상, 의자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소독방법)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하루 1회 이상 소독
 - (주의사항) 확진환자 접촉 직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상담 장소는 1일 최소 6회, 총2시간 이상 환기한다.

지사장/센터장

- 보건소장의 사무실 방역명령 이행
- 방역 후 주기적 사무실 소독 및 환기



4. 사무실 조치

< 사무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

① (부분폐쇄) 확진환자가 다녀간 1층 자격부와 민원실만 폐쇄하는 경우

- 지사장/센터장은 즉시 1층 사무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사무실 입구에 부분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른 층에 임시민원실 등을 설치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 지사 부분폐쇄 안내문 **붙임7**

- 보건소에서 지정한 직원은 자가격리하며 근태는 복무지침에 따른다(현재는 '공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관리 기준' 참조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 지역본부장은 자가격리된 직원 규모에 따라 지사 인력을 충원 조치한다.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지사 사무실 부분폐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지사사옥 부분폐쇄 보도자료 **붙임9**

지사장/센터장	▪ 해당 층 폐쇄, 폐쇄 안내문 부착 ▪ 임시민원실 설치, 민원업무 수행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 (본부) 부분폐쇄 보도자료 배포	

② (전체폐쇄)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사무실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

- 지사장/센터장은 즉시 사무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사무실 입구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 지사 전체폐쇄 안내문 **붙임9**

- 전직원은 자가격리하며 근태는 복무기준에 따른다(현재는 '공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기준' 참조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 지역본부장은 대체 지사를 지정하여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한다.

- 민원업무는 대체 지사에서 수행하고,
- 보험료 산정 등 긴급 업무는 본부·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유선민원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지사 사무실 전체폐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지사사옥 전체폐쇄 보도자료 **붙임10**

지사장/센터장	▪ 전체 층 폐쇄, 폐쇄 안내문 부착 ▪ 비상계획에 따라 업무 수행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대체지사 지정 업무추진 ▪ (본부) 전체폐쇄 보도자료 배포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5. 사무실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

- 지사장/센터장은 폐쇄된 사무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
- 지역본부장은 지사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예산 및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사무실 개방에 따른 업무시작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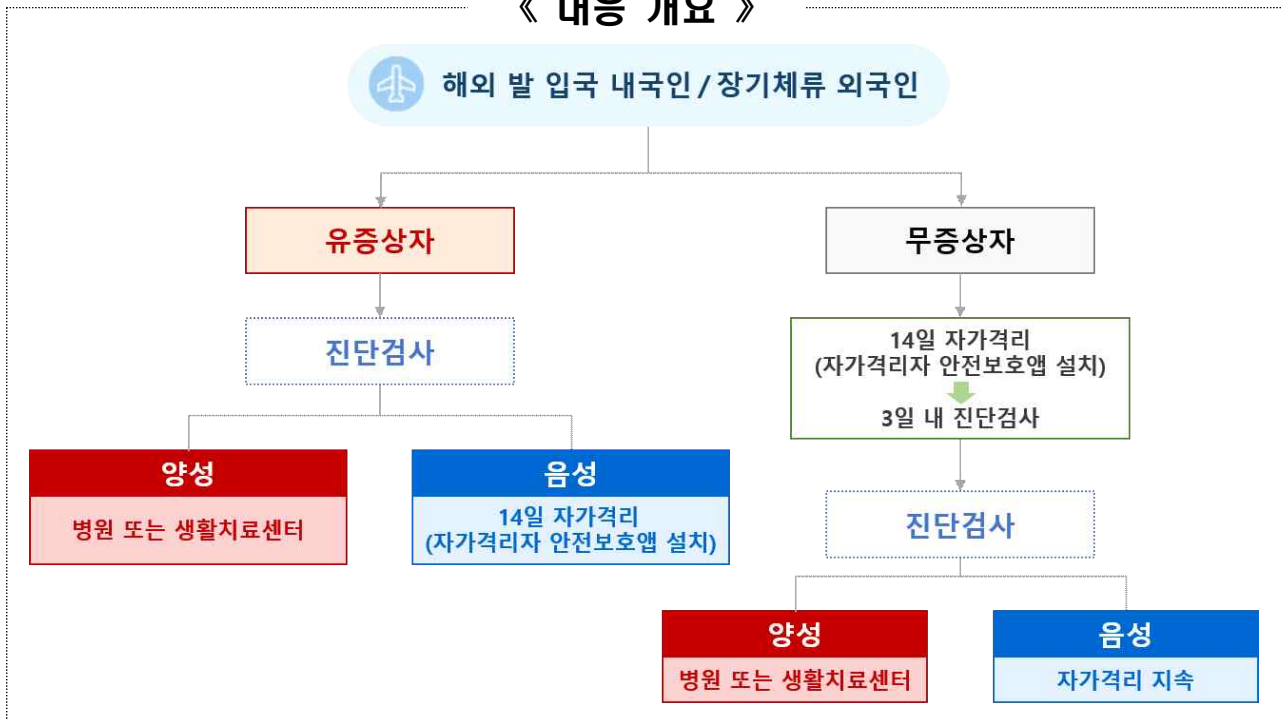
지사장/센터장	▪ 개방 시기 보건소와 협의 ▪ 업무개시 안내문 부착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 (본부) 업무시작 보도자료 배포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지사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2

해외귀국 유학생이 민원인으로 지사에 방문한 경우

《 대응 개요 》



[사례] 미국에 재학중인 유학생이 귀국 후 지사에 방문

- ▶ 대상직원 : ○○지사 4급 박○○
 - ▶ 접촉일시 : 2020. 11. 12일 14시, ○○지사 입구
 - ▶ 발생원인 : 미국 유학생 A군 → (11.5.) 귀국 → (11.7.) 진단검사 → (11.9.) 검사결과 음성
통보, 자가격리중 → (11.12.) 14시에 민원처리를 위해 지사방문
 - ▶ 노출기간 : 11.12일 ~
- ※ 참고: 11.5.입국자의 경우, 격리기간은 11.5.~11.19.이며, 11.19. 낮12:00시 격리해제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지사장/센터장은 관할 지자체장(신고센터, 안전신문고)에게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실을 알린다.
- ◆ 지사장/센터장은 직원들에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방문사실을 알린다.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직원에게 '코로나19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보건소 지시, 권고에 따라 접촉한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사무실 폐쇄, 소독 여부를 결정한다.

2. 당사자(자가격리 위반자)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신고센터 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민원인 박○○에 대한 조치를 한다.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 **내국인:**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지사장/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하여 민원인 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따른다.

-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로 격리 조치 변경 통지
- * 격리 조치 위반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이용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지사장/센터장

- 지방자치단체(신고센터 또는 안전신문고)에 박○○ 신고 조치



3. 소속직원 조치

① 자가격리 위반자 방문 안내 및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지사를 방문한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린다.
- 전직원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 직원에게 '코로나19 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보고를 하도록 한다. **붙임2**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지사 → 코로나19비상대책단 ...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2'로 대체
 - ☞ 코로나19비상대책단: 정명훈 팀장(033-736-4821, 내선 0099-4821)

지사장/센터장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지사 방문사실 전 직원 알림 ▪ 코로나19 비상대책단 발생보고	
전 직원	▪ 개인 보호장구 착용(마스크 등)	

4. 사무실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접촉한 직원에 대한 조치, 사무실 폐쇄, 소독 여부를 결정한다.

지사장/센터장	▪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접촉직원, 사무실 폐쇄 소독 여부 결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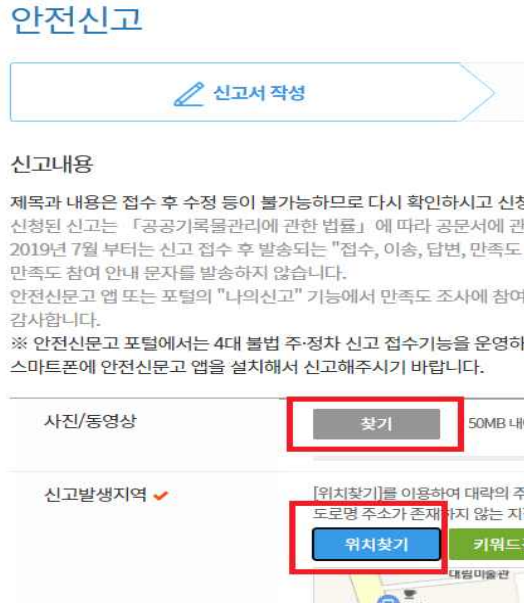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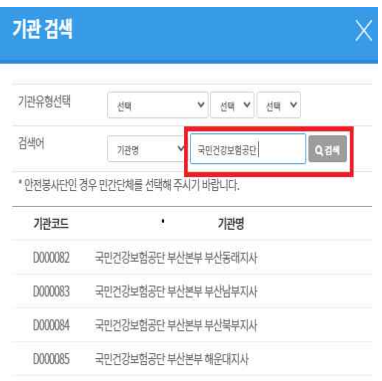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

▶ 신고 경로

- 인터넷: www.safetyreport.go.kr (명칭: 안전신문고)
-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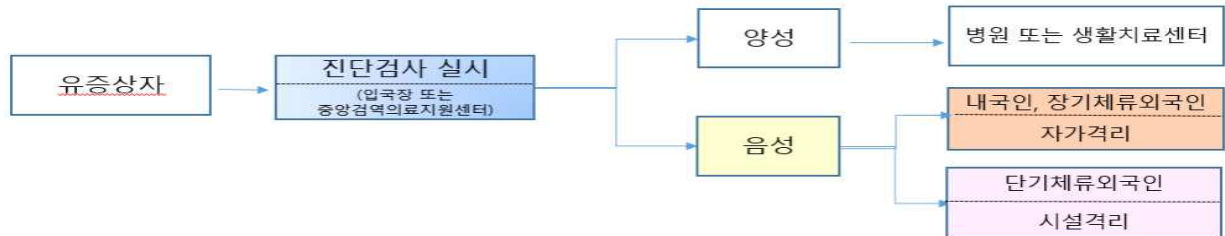
▶ 신고 방법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
- 안전신문고에 접속 /  안전신고 하단메뉴 '안전신고' 클릭
- 안전신고 화면에 내용 기재

① 사진 첨부, 위치찾기  안전신고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고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 2019년 7월 부터는 신고 접수 후 발송되는 "접수, 이송, 답변, 만족도 만족도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기능에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감사합니다. ※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동영상 찾기 50MB 내 신고발생지역 위치찾기 키워드 검색 [위치찾기]를 이용하여 대략의 주소로명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	② 제목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위반) 신고' 기재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 신고내용 최대 1600자 작성 가능 휴대전화 휴대전화 번호 입력 인증번호 받기 인증번호 인증번호 입력 확인 남은 시간: 시간연동 신고 내용 공유 ☒ 예 ☐ 아니요 내용보기 회사명 (선택) 사항 미 입력 시 신고이력 관리 및 진행사항 통보 등의 사후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분 ☐ 개인 ☒ 기관 ☐ 단체기업 기관명 검색 검색 이름 이메일 @ 선택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요 내용보기 취소 다음										
③ 기관검색: 검색어 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넣고 지사검색  기관유형선택 선택 선택 선택 검색어 국민건강보험공단 Q 검색 * 안전봉사단인 경우 민간단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코드</th> <th>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D000082</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동래지사</td> </tr> <tr> <td>D000083</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남부지사</td> </tr> <tr> <td>D000084</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북부지사</td> </tr> <tr> <td>D000085</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해운대지사</td> </tr> </tbody> </table>	기관코드	기관명	D0000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동래지사	D00008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남부지사	D00008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북부지사	D00008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해운대지사	④ 신고내용 입력(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 -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 -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됨
기관코드	기관명										
D0000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동래지사										
D00008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남부지사										
D00008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부산북부지사										
D00008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해운대지사										

[검역대응 흐름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2판)

□ 유증상자



* (음성) 격리면제자는 능동감시 실시, 주한미군/A3(협정) 체류자격 소지자는 소속부대에서 인계 및 자체격리 실시

□ 무증상자

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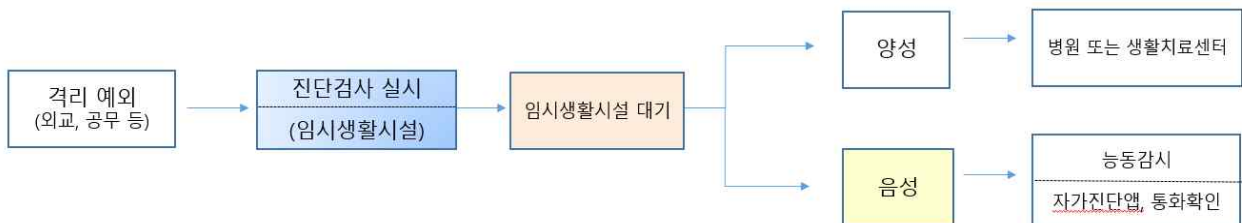


② 단기체류 외국인



③ 격리 면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체류자격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상황 3

직원이 의사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대응 개요 》

증상발생 후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시행
(중증일 경우 병원 이송)

[사례] 호흡기증상으로 진료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의사환자 : ○○지사 5급 박○○
- 발생원인 : 국내 집단발생지역 방문(추정)
- 발생일시 : 2020. 12. 1일 17:00분 ... 의료기관 폐렴(원인미상) 확인 후 의사 입원 지시
- 노출기간 : 11. 30일 ~ 12. 1일
- 사육 규모(자체 사육) ... 지상 2층, 지하 1층
 - 1층(민원실, 자격부과부), 2층(징수부, 보험급여부)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지사장/센터장은 직원들에게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직원에게 '코로나19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 지사장/센터장은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전체, 부분)한다.



※ 폐쇄 후 소독: ① (지자체장) 최초 방역조치 → ② (지사장, 센터장) 2~3회 자체소독 → ③ 8시간 이상(약제에 따라 다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의 업무를 **지역본부와 인근지사 등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지역본부 비상대책 별도 수립

2. 당사자 조치

○ **관할 보건소는** 박○○(○○지사)이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자가격리 조치이행을** 통보한다.

○ 박○○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가능
-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 가능(접촉 최소화)
-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N95/KF94마스크, 장갑 착용하고 이동 가능

○ **지사장/센터장은** 박○○이 즉시 선별진료소 이송 및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한다.

- 판정 전까지는 **자가격리**(공가, 복무기준에 따름) 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기준’ 참조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지사장/센터장

▪ 박○○ 즉시 선별진료소 이송 및 자가격리 조치



○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다.

- (유증상자가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에 따라 조치한다.
- (유증상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보건교육 후 격리해제, 증상 발현일부터 14일간 마스크 착용 등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한다.

보건교육

◆ [자제해야 할 일]

- 외출(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타인과의 접촉,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타인과 대화 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3. 소속직원 조치

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박○○이 조사대상 유증상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린다.
- 전직원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 직원에게 '코로나19 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보고를 하도록 한다. **붙임2**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지사 → 코로나19비상대책단 ...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2'로 대체
 - ☞ 코로나19비상대책단: 정명훈 팀장(033-736-4821, 내선 0099-4821)

지사장/센터장

-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사실 전 직원 알림
- 코로나19 비상대책단 발생보고



- 지사장/센터장은 박○○과 접촉한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유증상자 직원과 접촉한 직원 중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공가, 복무기준에 따름) 조치하며, 필요시 보건소 자문을 구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관리 기준참조 참고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붙임5

-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직원**은 박○○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박○○이 **양성인**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에 따라 조치한다.
 - (박○○이 **음성인** 경우) 정상출근 한다.

지사장/센터장	▪ 박○○과 접촉한 직원 조사 및 검사결과 확정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	
---------	--	---

4. 사무실 조치

- (**부분폐쇄**) ○○직원이 근무한 해당 부(팀)만 일시폐쇄하는 경우
 -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 입구에 해당부서 업무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른 층에 임시민원실 등을 설치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 지사 부분폐쇄 안내문 **붙임7**

- 지사장/센터장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등 환경소독제
 - ※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에서 환경부 승인 · 신고 제품 여부 확인가능
 - (소독대상)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책상, 의자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소독방법) 소독제를 분무 · 분사하는 방법은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하루 1회이상 소독
 - (주의사항) 확진환자 접촉 직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상담 장소는 1일 최소 6회, 총2시간 이상 환기한다.

지사장/센터장	▪ 해당 부서 업무 중지 안내문 부착 ▪ 임시민원실 설치, 민원업무 수행 ▪ 자체 사무실 소독 및 환기 실시	
---------	--	---

방역조치·소독

《 방역조치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방역조치: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등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코로나19비상대책단장)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5. 사무실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

- 지사장/센터장은 업무복귀 시기를 박○○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해당 부(팀) 정상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
- 지역본부장은 지사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예산 및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지사장/센터장	▪ 업무 복귀 시기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 업무개시 안내문 부착	
지역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지사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4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 대응 개요 》

검사결과 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질본(1339) 또는 보건소 신고,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시행



검사결과 후

[확진환자]

중증도에 따라 입원, 격리치료

[사례] 직원이 검사 결과 확진환자가 된 경우

- 확진환자 : ○○지사 4급 백○○
- 발생일시 : 2020. 11. 27일 17:00분 ... 보건소 통보 일시
- 발병원인 : 11.24일 친척인 확진환자와 식사
- 노출기간 : 11.24일 ~ 11.27일(4일간)
- 사육규모(자체사육) ... 3층 BD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지사장/센터장은 직원들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직원에게 '코로나19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 지사장/센터장은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 지사장/센터장은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전체, 부분)한다.



- ※ 폐쇄 후 소독: ①(지자체장) 최초 방역조치 → ②(지사장, 센터장) 2~3회 자체소독 → ③ 8시간 이상(약제에 따라 다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 ◆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의 업무를 **지역본부와 인근지사** 등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지역본부 비상대책 별도 수립

2. 당사자 조치

- **관할 보건소**는 ○○지사에 확진환자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 즉각대응팀)**을 출동시킴
- **확진환자**는 보건소의 중증도 평가 후 시도 환자관리반의 중증도 분류 및 병상배정 결과에 따라, 병원 또는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관할 보건소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인 직원은 **병가**처리하고, **자가격리** 직원들을 복무기준(현재는 ‘공가’)에 따라 처리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기준’ 참조

지사장/센터장	▪ 관할 보건소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 직원 병가 처리 및 자가격리 직원처리	
----------------	---	--

《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

- ◆ 이송 시 확진환자는 마스크(KF94 이상) 착용유지
-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전신보호복, 덧신, KF94 호흡기, 일회용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일회용 장갑) 착용
 - *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환자 및 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확진환자 격리해제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임상경과 기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일 격리해제 가능

- ▶ (검사 기반)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임상경과 기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1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 ▶ (검사 기반)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일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일 18시 검체 채취, 11.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3. 소속직원 조치

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지사장/센터장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보건소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지사 → 코로나19비상대책단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2'로 대체

☞ 코로나19비상대책단: 정명훈 팀장(033-736-4821, 내선 0099-4821)

- 지사장/센터장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직원, 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도록 한다.
 - 다만, 필요시 지사장/센터장은 CCTV 등을 활용, 조사팀 출동 전에 확진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다중시설 이용현황 및 접촉한 사람 명단을 조사팀에 제출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연락담당 직원에게 '코로나19 비상대책단'으로 상황발생보고(붙임2)를 하도록 한다.

지사장/센터장

- 확진환자 발생사실 전직원 알림
- 코로나19 비상대책단 발생보고



② 보건소 조치 이행

직 원

- 전 직원은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사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전 직원은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 ※ 범위: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으로 설정
 - ※ 노출력 고려: 확진환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

○ 역학조사관이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결정한 직원은 즉시 조사관의 지시에 따른다.

※ 의사환자로 판정 시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상황 1)'를 준용한다.

전 직원	▪ 지사 내 대기(이동 금지) ▪ 개인 보호장구 착용(마스크 등)	
--------------------	---	---

방역조치·소독

《 방역조치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방역조치: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등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코로나19비상대책단장)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 방역·추가소독을 실시하며, 실시방법·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세 번째 소독이 끝나고 8시간 이상 경과 후(사용 약제에 따라 다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방역팀)에서 실시, 2·3회는 지사장/센터장이 외부업체 또는 자체소독 실시

○ 지사장/센터장은 방역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사무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등 환경소독제

※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에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 확인가능

- (소독대상)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책상, 의자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소독방법)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하루 1회 이상 소독

- (주의사항) 확진환자 접촉 직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상담 장소는 1일 최소 6회, 총2시간 이상 환기한다.

지사장/센터장	▪ 보건소장의 사무실 방역명령 이행 ▪ 방역 후 주기적 사무실 소독 및 환기	
---------	---	---

4. 사무실 조치

< 사무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

① (부분폐쇄) 확진환자가 근무한 1개 층만 폐쇄하는 경우

- 지사장/센터장은 즉시 해당층 사무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사무실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른 층에 임시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 지사 부분폐쇄 안내문 **붙임7**

- 지역본부장은 자가격리된 직원 규모에 따라 지사 인력을 충원 조치한다.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지사 사무실 부분폐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지사 부분폐쇄 보도자료 **붙임9**

지사장/센터장	▪ 해당 층 폐쇄, 폐쇄 안내문 부착 ▪ 임시민원실 설치, 민원업무 수행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 (본부) 부분폐쇄 보도자료 배포	

② (전체폐쇄)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사무실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

- 지사장/센터장은 즉시 사무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사무실 입구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 지사 전체폐쇄 안내문 **붙임8**

- 전직원은 자가격리하며 근태는 복무기준에 따름(현재는 '공가')로 한다.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5**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관리 기준참조 참고

- **지역본부장은** 대체 지사를 지정하여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한다.
 - 민원업무는 대체 지사에서 수행하고,
 - 보험료 산정 등 긴급 업무는 본부·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유선민원은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지사 사무실 폐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지사 전체폐쇄 보도자료 **붙임10**

지사장/센터장	▪ 전체 층 폐쇄, 폐쇄 안내문 부착 ▪ 비상계획에 따라 업무 수행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대체지사 지정 업무추진 ▪ (본부) 전체폐쇄 보도자료 배포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5. 사무실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

- 지사장/센터장은 폐쇄된 사무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사장/센터장은 사무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
- 지역본부장은 지사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예산 및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 본부 국민소통실장은 사무실 개방에 따른 업무시작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지사장/센터장	▪ 개방 시기 보건소와 협의 ▪ 업무개시 안내문 부착	
지역본부/본부	▪ (지본) 인력 및 물품 지원 ▪ (본부) 업무시작 보도자료 배포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지사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붙임

1.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31
2. 상황발생 보고 서식	36
3. 방역조치 명령서	37
4. 입원 · 격리통지서	38
5.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39
6.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0
7. 지사 부분폐쇄 안내문	41
8. 지사 전체폐쇄 안내문	42
9. 지사사옥 부분폐쇄 보도자료	43
10. 지사사옥 전체폐쇄 보도자료	44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45
12. 전국 보건소 현황	46

[일반국민 10대 수칙]

1.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합니다.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세요.
8.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을 확인하세요.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가능하면 집에 머무릅니다.
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3. 기저질환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합니다.

[유증상자 10대 수칙]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리(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손 쉬운 방법

올바른 손씻기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 | | |
|-------------------------------|-------------------------------|-------------------------------|
| <p>1</p> <p>손바닥</p> | <p>2</p> <p>손등</p> | <p>3</p> <p>손가락 사이</p> |
| <p>4</p> <p>두 손 모아</p> | <p>5</p> <p>엄지 손가락</p> | <p>6</p> <p>손톱 밑</p> |

발행일 2020.10.15.

코로나19 상황 발생 보고

(‘20.0.00.(0), 00지사, 000 ☎ 033-736-4821)

대상직원	
성명	
소속	00지사 00부
거주지	
동거인	

상황발생	
인지 경로·일자	본인신고, 보건소 통보(2020.0.00.)
해당직원 근태	휴가[], 공가[], 병가[], 근무중[]
해당직원 근황	

진료상황	
분류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병의심자[]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 가장 근접일로 작성
최초 병원방문일	
검사일·검사기관	검사일자, 000보건소
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진행중[], 검사미 실시[]
확진일	

전파경로	
감염 경로 추정	동거가족[], 비동거가족[], 동거인[], 지인[], 해외여행[], 대중시설[]
전파 추정일자	2020. 0. 00.
전파자 상황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병의심자[]
전파자 확진일	2020. 0. 00.

붙임 3 방역조치 명령서

일시적 폐쇄 ☐ 출입금지 ☐ 이동제한 ☐ 의료기관 업무정지 ☐ 소독 ☐ 조치서						
해당 시설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의 내용	조치의 구분					이행기간 2020. 00:00 ~ 2020. 00:00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조치대상	범위	시설 전체			시설 일부 (범위 한정 시 구체적으로 기재)	
준수사항	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해야 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한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제2호(의료기관 업무정지), 제5호(소독)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를 조치합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 보건소장 (관인생략)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유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4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11.>

입원·격리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 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 병원	[] 자택 [] 시설
	입원/격리 장소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 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 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 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 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 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 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2).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자가격리 대상자와 분리 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을 피합니다.
 -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 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 *을 자주 소독하여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 원, 의료기관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2).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 염, 피부 증상 등

☞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층에서
발생(방문)함에 따라
자격부과 업무를 2층에서 수행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유선상담 가능 업무 ⇒ 고객센터(1577-1000)

2020. 1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지사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사옥을 일시폐쇄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유선상담 가능 업무: 고객센터(1577-1000)
- ◆ 내방민원 업무: ◇◇ 지사(충구 하늘로 100, ☎735-1200)

2020. 1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지사 행정지원부		
부장	김홍보	033)736-0000	배 포 일 2020. 11. 24.(화)(총1매)
팀장	이홍보	033)736-0000	배포부서 행정지원팀
		부장 임영희 팀장 최재우 02) 2126-0000,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옥 부분폐쇄

—코로나19 00환자 발생에 따른 사옥 부분폐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해 11월 24일 0시부터 지사 사옥 1층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지사장은 “이번 사옥 부분폐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팀)의 업무는 다른 층에서 상담하나 업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하며,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업무 안내

- 전화상담: ☎ 1577-1000, 031-000-0000
- 팩스 민원 ☎ 031-000-0000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지사 행정지원부		
부장	김홍보	033)736-0000	배 포 일 2020. 11. 24.(화)(총1매)
팀장	이홍보	033)736-0000	배포부서 행정지원팀
		부장 임영희 팀장 최재우 02) 2126-0000,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옥폐쇄 및 업무중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사옥 일시 전체폐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해 11월 24일 0시부터 지사 사옥을 폐쇄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 지사장은 “이번 사옥 폐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상담은 공단 콜센터에서, 팩스민원은 업무집중화 센터에서 대행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민들께서는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업무 안내

- 전화상담: ☎ 1577-1000, - 팩스 민원 ☎
- 방문 민원 ♡♡지사 (○○시 □□길 ☎)

붙임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시행일 : 2020. 7. 1.] E형간염에 관한 부분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찰진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Dengue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 실시	입원여부	[] 우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2 전국 보건소 현황

2019.12월말 기준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7200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00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600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00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422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60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423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4501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600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465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1439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20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01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114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01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1749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20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4340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311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50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152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1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6317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710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부산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51-970-3415
	금정구	금정구보건소	051-519-5051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051-709-4791
	남구	남구보건소	051-607-6460
	동구	동구보건소	051-440-6500
	동래구	동래구보건소	051-555-4000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051-645-4000
	북구	북구보건소	051-309-4500
	사상구	사상구보건소	051-310-4791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051-220-5701
	서구	서구보건소	051-242-4000
	수영구	수영구보건소	051-752-4000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051-665-4781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051-416-4000
	중구	중구보건소	051-600-4741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01
대구	남구	남구보건소	053-664-3610
	달서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18
	달성군	달성군 보건소	053-668-3333
	동구	동구보건소	053-662-3201
	북구	북구보건소	053-665-3208
	서구	서구보건소	053-663-3111
	수성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중구	중구보건소	053-661-3121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인천	강화군	강화군보건소	032-930-4013
	계양구	계양구보건소	032-430-7801
	남동구	남동구보건소	032-464-4001
	동구	동구보건소	032-762-4001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310
	부평구	부평구보건소	032-509-8200
	서구	서구보건소	032-560-5000
	연수구	연수구보건소	032-749-8000
	옹진군	옹진군보건소	032-899-3110
	중구	중구보건소	032-760-6010
광주	광산구	광산구보건소	062-960-8733
	남구	남구보건소	062-607-4311
	동구	동구보건소	062-608-3261
	북구	북구보건소	062-410-8961
	서구	서구보건소	062-350-4108
대전	대덕구	대덕구보건소	042-608-5499
	동구	동구보건소	042-251-6112
	서구	서구보건소	042-288-4500
	유성구	유성구보건소	042-611-5011
	중구	중구보건소	042-288-8000
울산	남구	남구보건소	052-226-2805
	동구	동구보건소	052-209-4080
	북구	북구보건소	052-289-3450
	울주군	울주군보건소	052-204-2798
	중구	중구보건소	052-290-43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044-301-2000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기	가평군	가평군보건소	031-582-2488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3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83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0
	과천시	과천시보건소	02-2150-3800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02-2680-2862
	광주시	광주시보건소	031-760-2110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031-550-8681
	군포시	군포시보건소	031-389-4947
	김포시	김포시보건소	031-980-5011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031-590-2552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4771
	동두천시	동두천시보건소	031-860-3419
	부천시	부천시 오정보건소	032-625-4373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032-625-4183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031-729-3930
	부천시	소사보건소	032-625-4258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031-228-8716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5802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16
	시흥시	시흥시보건소	031-310-5811
	안산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6347
	안산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031-481-5551
	안성시	안성시보건소	031-678-5710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8045-4472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031-8045-3472
	양주시	양주시보건소	031-8082-7106
	양평군	양평군보건소	031-770-3505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기	여주시	여주시보건소	031-887-3601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324-6911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324-8924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11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031-345-3541
	의정부시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01
	이천시	이천시보건소	031-635-2400
	파주시	파주시보건소	031-940-4800
	평택시	평택시 송탄보건소	031-8024-6615
	평택시	평택시 평택보건소	031-8024-5553
	포천시	포천시보건소	031-538-3600
	하남시	하남시보건소	031-790-6555
	화성시	화성시보건소	031-5189-2551
강원	강릉시	강릉시보건소	033-660-3010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033-681-4000
	동해시	동해시보건소	033-530-2401
	삼척시	삼척시보건소	033-572-4000
	속초시	속초시보건소	033-631-4000
	양구군	양구군보건소	033-481-2400
	양양군	양양군보건소	033-670-2550
	영월군	영월군보건소	033-370-2550
	원주시	원주시보건소	033-737-4011
	인제군	인제군보건소	033-461-2425
	정선군	정선군보건소	033-562-4000
	철원군	철원군보건소	033-450-5550
	춘천시	춘천시보건소	033-250-3550
	태백시	태백시보건소	033-552-4000
	홍천군	홍천군보건소	033-430-4000
	횡성군	횡성군보건소	033-340-5612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충북	괴산군	괴산군보건소	043-832-4000
	단양군	단양군보건소	043-420-3201
	보은군	보은군보건소	043-540-5600
	영동군	영동군보건소	043-740-5600
	옥천군	옥천군보건소	043-730-2114
	음성군	음성군보건소	043-872-2136
	제천시	제천시보건소	043-641-2720
	증평군	증평군보건소	043-835-4220
	진천군	진천군보건소	043-539-7771
	청주시	청주시 상당보건소	043-201-3100
	청주시	청주시 서원보건소	043-201-3215
	청주시	청주시 청원보건소	043-201-3421
	청주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043-201-3300
	충주시	충주시보건소	043-850-3411
충남	계룡시	계룡시보건소	042-840-3567
	공주시	공주시보건소	041-840-8755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041-750-4311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041-746-8011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041-360-6005
	보령시	보령시보건소	041-930-0900
	부여군	부여군보건소	041-835-8600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041-667-6550
	서천군	서천군보건소	041-950-6700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041-537-3403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041-339-8993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2650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2552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041-632-2588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전북	고창군	고창군보건소	063-560-8714
	군산시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김제시	김제시보건소	063-540-1300
	남원시	남원시보건소	063-625-4000
	부안군	부안군보건소	063-584-1261
	완주군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익산시	익산시보건소	063-859-4802
	전주시	전주시 보건소	063-281-6213
	정읍시	정읍시보건소	063-539-6072
	진안군	진안군보건소	063-430-8560
전남	강진군	강진군보건소	061-430-3534
	고흥군	고흥군보건소	061-830-5561
	광양시	광양시보건소	061-797-4004
	나주시	나주시보건소	061-339-2121
	담양군	담양군보건소	061-383-4000
	목포시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무안군	무안군보건소	061-450-5014
	보성군	보성군보건소	061-853-4000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061-749-6905
	신안군	신안군보건소	061-243-8550
	여수시	여수시보건소	061-683-4000
	영광군	영광군보건소	061-350-5552
	영암군	영암군보건소	061-470-6525
	장성군	장성군보건소	061-390-7550
	장흥군	장흥군보건소	061-860-0550
	진도군	진도군보건소	061-540-6005
	함평군	함평군보건소	061-320-2405
	해남군	해남군보건소	061-531-3738
	화순군	화순군보건소	061-379-5305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북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053-810-6363
	경주시	경주시보건소	054-779-8573
	고령군	고령군보건소	054-954-1300
	구미시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00
	구미시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1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054-380-7401
	김천시	김천시보건소	054-433-4000
	문경시	문경시보건소	054-555-2033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054-673-4000
	상주시	상주시보건소	054-535-4000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054-933-2400
	안동시	안동시보건소	054-855-5986
	영덕군	영덕군보건소	054-730-6823
	영양군	영양군보건소	054-680-5114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영천시	영천시보건소	054-330-7860
	예천군	예천군보건소	054-650-8011
	울진군	울진군보건소	054-789-5000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청도군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칠곡군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포항시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004
	포항시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114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남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거창군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055-670-4001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055-330-4451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밀양시	밀양시보건소	055-359-7020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055-380-4000
	의령군	의령군보건소	055-570-4010
	진주시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창녕군	창녕군보건소	055-530-6202
	창원시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창원시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창원시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함양군	함양군보건소	055-960-5331
	합천군	합천군보건소	055-930-368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11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01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51
	제주시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180
	제주시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11
	제주시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100